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안심사보고서

1991. 9. 2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1. 8. 20

나. 제안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1. 9. 25

라. 상정일자 : 91. 9. 26

2. 제안설명의요지(提案說明者 財務課長 서상우)

가. 제안이유 :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는 현실적으로 사무용품구입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관서당 경비에서 기본사무용품을 일괄 조달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조례 제4조에 기본사무용품비 1인 기준액은 내무부 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91편성 지침에서 삭제되어 있으며, 현재 사무용품을 조달청에서 일반구입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가. 찬 성 :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실
분기별 2,500원으로 사무용품 구입에 별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재는 조달청
부터 일괄구입해서 사용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지출되지 않으므로 본조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나. 반 대 : 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심사보고 유첨 : 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 로
으 로
폐 지

대구직할시달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1988. 5. 1 조례제2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